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상속세 일괄공제·배우자공제 5억→7.5억 상향 추진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5억원에서 7억5천만 원으로 각각 50%씩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의원은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각각 50%씩 상향해 7억 5천만원 으로 상향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는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데 일괄공제는 5억원,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을 보장하고 있다.

일괄공제 대신에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1인당 5 천만원) 등 인적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인적공제 제 도를 모두 적용해도 일괄공제 5억원보다 낮은 경우가 많 아 대부분의 상속에서 일괄공제를 받고 있다.

그런데 현행 공제 수준은 1996년말 상증세법을 전면 개정 후 27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안도걸의원이 제시한 2023년도 상속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5년 전 대비 상속세 대상은 2배 (9833명) 정도 늘었는데, 상속재산 20억원 미만이 전체 증기분의 69%를 차지한다.

상속세 과세 대상을 줄이고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과 불 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제금액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안도걸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상속세 면제 대상이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확대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3년 기준, 과표 3억원 미만(7520명)의 대부분이 상속 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3억원~5억원 구간(2712명) 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된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현재 사망자의 5.2% 수준에서 23~25% 수준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전체 사망자의 0.4%에 해당하는 1200명만 혜택을 본다"면서, "수백, 수천억 고액자산가들에게 2조원의 감세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명백한 부자감세로 국회에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인적용역 135만명에 소득세 환급 안내…1792억원 규모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26, 27일 양일간 배달라이더 등 33%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명에 기한 후 소득세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 세자로 계속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 (2023년 귀속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 및 당 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이다.

안내문은 카카오톡 및 네이버를 통해 안내문이 보내지 며, 인터넷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을 경우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안내문에 따라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2019년부터 2023년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되고,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 입력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누르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환급신고 절차를 모두 마쳐야 받을 수 있으며, 8월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종합소득 세 환급금을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자동 환급된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1-3-2) 또 는 세무서(소득세과)로 연락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기한 후 환급신고'와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될 경우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금 찾아주기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납세자들이 민간업체 이용 시 부담하는 수수 료 없이 보다 편리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